

## 2022학년도 수시모집 총원합격자 발표 안내

1. 총원합격자 발표 기간 : 2021.12.20.(월) 18시~12.30(목) 21시
2. 총원합격자 통보
  - 가. 미등록 인원 및 입학포기자 발생 시 전형별 후보 순위에 따라 순차적 발표
  - 나. 기한 내 미등록 시 후순위 후보자에게 총원합격 통보
  - 다. 총원합격자 통보 방법
    - 1) 개인별 총원합격 문자메시지 발송
    - 2)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수험생서비스(<http://ipsi1.gch.ac.kr/>) [합격조회] 메뉴에서 확인
3. 총원합격자 등록 안내
  - 가.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수험생서비스(<http://ipsi1.gch.ac.kr/>) [예치금고지서출력] 메뉴에서 예치금 납부기간 및 가상계좌 확인
  - 나. 지정기간 내 가상계좌 입금 또는 고지서 출력 후 은행(농협은행 및 국민은행) 창구 납부
  - 다. 지정기간 내 미납부 또는 등록포기의사 피력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총원합격 통보
  - 라. 타 대학 입학포기(또는 예치금 환불) 전이라도 본대학 예치금 납부 가능  
(단, 2021.12.30.(목) 최종 등록 마감 전까지는 1개 대학에만 등록되어 있어야 함)
4. 기타 유의사항
  - 가. 입학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오기 및 수험생 부재, 연락두절로 인하여 총원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개인정보 변동 시 우리대학 입학홍보센터 (054-420-9251~9253)로 연락하여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054-420-9200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총원합격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상시 수신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다.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 및 제42조의 2)

**제42조(입학지원방법 등)** ①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,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(교육대학은 포함하되, 산업대학·전문대학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학(교육대학은 포함하되, 산업대학·전문대학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.

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42조의2(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)**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.